주택 자산 전환 모기지(HECM) 반과당매매 공시

1. 저당권 설정자에 대한 재융자 총비용.

미국 주택 도시개발부 주택 사무소

OMB 승인 번호 2502-0524 만료 2024년 4월 30일

\$

개인정보 보호법 통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연방주택관리국은 미국 법전 제12편, 제1701조 이하 및 연방규정집 제12편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의거하여 양식에 요구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응답자에 대한 기밀유지는 보장되지 않지만, HUD는 일반적으로 정보 자유법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만 이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차용인에 대한 통지

국가주택법 제255조에 따라, 대출업자는 HECM을 재융자하려는 주택 소유주에게 예상 총 미래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새모기지의 총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업자는 HECM의 재융자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을 공개하고, 차용인에게 새로운 최대 모기지 한도를 제공하고, 차용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 공개는 대출업자가 대출 수수료 및 비용에서 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수의 재융자에 관여하는 무책임한 대출관행인 "과당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과당매매된" 모기지는 차용인의 이익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며 차용인에게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존 HECM 모기지 재융자가 이득이 되지 않는 HECM 차용인에게 대출업자가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권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연방주택관리국(FHA)은 대출업자가 HECM 차용인에게 다음과 같은 최상의 견적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입력할 저당권자: 선불 MIP와 기타 클로징 비용 및 서비스 예비비를 합한 총액 \$.

2. 보험에 가입할 모기지의 예상 최초 원금 한도에서 재융자 중인 HECM의 현재 원금 한도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 저당권 설정자의 원금 한도 증가액.	합역일 서당현시: 세 현급 안도의 달디(\$) 그애에서 기조 UCCM 의그 하디어 \$
	클로징 비용이나 기타 수수료를 차감한 최상의 견적을 제공해야 †러 금액에서 재융자할 HECM의 상환 금액을 차감한 달러
모기지 "과당매매"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FHA 승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대출업자는 24 CFR Part 25에 따라 모기지 심사 위원회의 행정적
FHA 사례 번호: 대상 건물 주	소:
대출업자의 서명:	날짜:
차용인인 본인은 대출업자로부터 본인의 HECM 모기지 재융자 총비용 및 새 원금 한도에 대한 최상의 견적을 제공받았습니다. 본인은 이 새 대출을 받기 위해 클로징 비용과 기타 수수료를 지불한 후 사용 가능한 새 자금의 금액을 이해합니다.	
차용인 이름: (입력하거나 인쇄체로 기입)	
차용인 이름: (입력하거나 인쇄체로 기입)	
차용인의 서명:	날짜:
차용인의 서명:	날짜: